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손 찬 호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	3
제1절 지역경찰의 개념과 임무	3
제2절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운영실태	6
제3절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의 한계	12
제4절 방법활동능력의 강화를 위한 대책	20
제3장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22
제1절 문제의 제기	22
제2절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정립	24
제3절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영역 확대	26
제4절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 신설 운영	28
제5절 소결	34
제4장 지역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방안	35
제1절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35
제2절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교통정리 등 민간경비 전담	36
제3절 시설호송기계경비의 민간경비 활용 확대	38

제4절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및 집단민원 등에 민간경비 활용	40
제5절 소결	41
제5장 지역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	42
제1절 문제의 제기	42
제2절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43
제3절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47
제4절 기계경비업의 내실화	57
제5절 소결	63
제6장 결론	66
[참고문헌]	7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역주민의 ‘친절한 이웃’이자 ‘지역수호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경찰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가 방범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경비를 지역방범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활용하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 효율적인 협력방범체제가 구축되어 지역방범치안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인력은 세계 각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볼 때 우리나라는 5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담당하고 있다.¹⁾ 이렇게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민간경비의 활용이다. 민간경비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당시에 10개이던 경비업체가 88서울 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급성장하여 1995년에는 민간경비업체가 785개, 경비원이 44,720명에 이르고, 2006년 말 현재는 경비업체 2,671개, 경비원 127,620명으로 전·의경을 제외한 직업 경찰관 수 95,613명을 초과하고 있으며,²⁾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³⁾ 그러므로 지역경

1)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경무), 2007. 9. 20 방문; 서울신문, 2006. 1. 4, 7면(미국 뉴욕 222명 · 워싱턴 160명 · LAPD 380명, 일본은 사실상 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직 2만 7천명 포함 458명, 영국 · 프랑스 · 독일 300명 전후).

2)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로부터 출발하여 차츰 민간경비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수의 민간경비회사가 설립되었고, 1973년의 청원경찰법 제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했으며, 1980년대 초 외국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과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박병식, 기계경비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98-6, 1998. 97면);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생활안전·경무), 2007. 9. 20 방문.

3)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기능의 축소와 테러에 대한 위협의 증가 및 대형상업시설들의 초대형화는 계속적으로 민간경비의 역할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이기호,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

찰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방법활동에 방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경비가 지역경찰의 방법활동을 분담함으로써 지역방법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안전을 보다 더 튼튼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방법활동 협력체제의 정립과 민간경비의 영역확대 등으로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등을 검토하여,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을 확대함은 물론 민간경비를 활성화시켜 완벽한 지역방법치안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의 정립과 영역 확대로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민경비의 활성화로 완벽한 지역방법치안을 확보하는데 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개념과 임무를 살펴보고,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지역경찰력의 방법활동 능력의 한계와 그 개선 대책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역할강화와 관련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정립을 검토하고, 지역경찰 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 영역 확대 및 민간경비의 관리 전담부서 신설 운영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방안으로 지역경찰과 민

간경비의 연계 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행사경비)·교통정리(교통유도) 등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경비의 민간경비 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및 집단민원 등에 민간경비 활용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 지역방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방안으로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기계경비업의 내실화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검토한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지역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지역방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각종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잡지에 실린 논문, 그리고 정부발간 정책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및 우리나라 지역경찰 방법활동과 민간경비 문제에 관련한 통계자료 등은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활용하였다.

셋째, 지역경찰 방법활동과 민간경비 문제에 관련한 법적문제는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 활용하였다.

제2장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

제1절 지역경찰의 개념과 임무

1. 지역경찰의 개념

지역경찰이란 경찰의 업무별 구분에 의한 한 분야로서 일정한 담당구역을 가지는 지구대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경찰관이 범죄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발생하는 각종 경찰사건·사고에 즉응하는 활동과 경찰민원을 처리하고 범죄정보 및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집 해결하도록 하는 전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초기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⁴⁾

지역경찰제 추진배경은 2001년 4월 파출소 3교대제 시행 이후 경찰관이 충원되지 않아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동 단위 파출소로 과도하게 경력이 분산되어 유기적이고 자발적인 공조체제 미흡으로 현장대응력이 취약함은 물론 파출소가 규제와 봉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많은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데 한계 노정으로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파출소 운영체계를 지역경찰제로 전환,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영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대민 치안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면적·우범지역·범죄 발생요소 등 대민치안요소와 주민생활권·주요도로접근성·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알맞게 기존 파출소 3-4개를 통합 관할범위를 넓혀 기존의 시설과 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순찰과 단속, 신고출동 등 현장치안활동을 중점 수행토록 운영하는 체제이다.

2. 지역경찰의 임무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데 있다.⁵⁾ 이를 위해 지역경찰은 부단

4) 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2007, 353면.

5) 경찰청 훈령 제496호(2006. 11. 27. 일부개정),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일

한 범죄예방활동을 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자(Law Enforcement Officer)를 넘어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한 매개자로서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즉 부단한 범죄 예방활동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일정한 초기적 범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경찰의 임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로 지역경찰은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경찰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여기에 대응하여 합당한 경찰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경찰은 상시경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범죄 기도자의 범의를 포기하게 하고 국민에게는 평온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지역경찰은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은 순찰지구대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초기적 단계를 지역경찰근무에 의하여 수행하며, 전담경찰의 업무 중 일정한 범위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예를 들면 범죄수사 분야의 경우 신고출동, 현행범의 검거, 피해신고의 수리, 현장보존과 증거수집, 기타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 조치와 수사를 하여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업무를 인계한다. 지역경찰관이 초동적인 조치만을 담당하는 것은 일정한 단계 이

본의 경우 '지역경찰운영규칙'(昭和40年6月19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5號, 最終改正: 平成6年6月2日 國家公安委員會規則 第14號) 제2조에 따르면 지역경찰은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에 즉응하는 동시에 주민의 의견 및 요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함과 함께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경찰사상(警察事象)에 즉응하는 활동을 행하고, 복잡한 시민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경찰관은 지역을 담당하여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시민에게 적극적인 봉사를 행하고, 시민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함과 함께, 관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호래,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18호, 2004. 12, 36면).

6) 박현호, 앞의책, 355-356면.

상의 업무는 전담경찰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사무 처리의 신속 정확과 전담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고, 지역경찰이 특정사건 처리에 과다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 담당구역 전반의 치안유지와 대민봉사에 공백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⁷⁾ 지역경찰의 임무가 초기적·즉응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지역경찰활동 자체의 목적성이 경시되어 전담경찰에 종속되어 보조역할만을 수행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범죄예방기능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지역경찰의 독자성과 전문성·중요성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셋째로 지역경찰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주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임무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지역경찰이 지구대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의 곁에서 상시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주민의 일상생활의 안녕을 보호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전담경찰의 경우보다도 더욱 본질적이며 직접적인 모습으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별한 사태나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경찰은 초동조치만을 취한 뒤 그 사건을 전담경찰에 인계하고 다시 주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온의 유지활동으로 복귀한다.

제2절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운영실태

1. 지역경찰의 운영현황

지역경찰제는 2003. 9. 17 경찰청 훈령 제409호, 지역경찰조직 및 운

7) 여기에서의 초동조치란 경무·교통·수사·정보·보안 등 전담경찰이 처리하는 업무를 초동 조치만하고 인계하는 것을 말하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중극적인 사안처리도 할 수 있고, 일정단계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0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 826개소·파출소 528개소로 총 1,354개소이다. 그리고 치안센터는 1,618개소이다.⁸⁾

지역경찰관서의 핵심인 지구대는(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지구대장과 3교대를 위한 3명의 순찰팀장, 2명의 관리요원, 3개팀의 순찰요원, 치안센터별 2명의 민원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지구대 보다 규모가 작은 파출소는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찰요원은 3개 순찰팀으로 편성해 24시간 각 팀별로 일근·당번·비번 등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구대 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대 활동과 업무의 총괄지휘 및 지역책임자로 지구대장(1명)과 지구대 행정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요원(2명)은 일근근무를 하고 있다. 3개팀으로 편성해 24시간 각 팀별로 일근·당번·비번 등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팀은, 팀별로 소속 순찰요원의 근무를 감독하고 제반사건·사고발생시 현장을 지휘·처리하는 교대제의 순찰팀장 1명,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며 지구대 관할지역에 대한 현장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요원은 112순찰차 4대 8명(1대 2명), 도보순찰 3개조 6명(1개조 2명), 오토바이순찰 3개조 3명(1개조 1명), 상황근무 1개조 2명 등 20명이다.¹⁰⁾ 그리고 치안센터에서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업무처리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원담당관은 치안센터별 2명 정도이다.

8)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생활안전), 2007. 9. 20 방문.

9) 독일의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산하에 지구경찰서와 파출소 설치, 지구경찰서 순찰과는 5개팀으로 24시간 근무를, 파출소는 월-금까지 주간 근무를 실시하고, 일본의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지역에서 주관한 '자동차경라반'을 두어 전체 순찰차 통합운영 도시지역은 '교번'을 농·어촌지역은 '주재소'를 두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하며, 미국의 지역경찰제 워싱턴주 타코마경찰서의 경우 방법순찰근무는 'Operation Bureau'에서 실시하고 'Operation Bureau' 산하에 2개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서울지방경찰청, 지역경찰업무 매뉴얼, 2004. 4면).

10) 서울 지방경찰청의 경우 지구대는 근무인원 60-70명 내외이고, 파출소의 근무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지역경찰의 인력은 정원보다 현원은 항상 부족하고, 교육·연가·병가 등 사고자가 생길 경우 이를 제외하면 실 근무인원은 1개 팀에 순찰요원 15-6명 정도이다. 여기에 시위진압이나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경호·재해경비 등에 지구대 요원이 동원될 경우 순찰차를 휴차하거나 도보순찰 등을 생략하게 되어 3부제 운영의 기본 틀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각종 신고접수·처리 등 경찰민원업무 처리, 대민 봉사활동, 치안모니터링 활동 등의 업무를 위해 치안센터(통폐합되어 없어진 기존 파출소 건물)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민원담당관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순찰요원 부족 등으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흡수되었고, 치안센터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상주 근무로 지구대 순찰요원들의 순찰거점 및 휴게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07. 7. 1 “경찰기관 상시 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의 발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경찰 주 40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정착을 위한 ‘4조 2교대 탄력근무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¹¹⁾

2. 지역경찰의 방법활동

가. 순찰

순찰이란 경찰관이 관내의 일정한 지역을 순회 시찰하는 활동으로¹²⁾ 지역경찰관의 근무 중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방법활동의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근무는 순찰근무이다. 지역경찰관은 순찰 중 불심검

11) '07. 7.1 현재 지역경찰 4조 2교대 확대 시행 관련 경찰서는 전국 65개 경찰서이고, 그중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15개 경찰서(1급지 경찰서 50%)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12) 박현호, 앞의 책, 233면.

문¹³⁾, 범죄의 예방과 제지, 현행범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발생의 방지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방법홍보, 우범자 관찰보호 및 수배 또는 제사범의 단속, 관내상황의 관찰 및 파악, 미아가출인의 발견 기타 순찰 중 인지한 사건의 취급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경찰의 순찰근무에는 순찰수단에 따라 112순찰, 도보순찰, 오토바이순찰 등이 있다.¹⁴⁾ 차량에 의한 112순찰은 담당구역 내 범죄취약지 등 넓은 지역을 순찰하며 112신고사건 접수시 높은 기동성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를 한다. 특히 차량에 의한 112순찰은 위력순찰로 가시적 방법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도보순찰은 우범지역·사건사고 다발지역·이면목길·인파밀집지·터미널·관광지 등 취약지에 취약시간대에 집중배치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이는 순찰한다. 도보순찰은 순찰의 원형이자 예방효과가 큰 순찰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토바이순찰은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 등 우범 주택지역에 중점 배치하고, 교통혼잡 시간대 및 교통체증으로 112 순찰차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적극 활용한다. 오토바이 순찰도 112신고 및 신속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 상황발생시 출동요소로 활용한다.

나. 방법진단

방법진단이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

13)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나 의심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불심검문은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하는 최일선 경찰작용의 하나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대민 접점 경찰 활동이다(불심검문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4) 그 밖에도 순찰은 순찰 수단에 따라 헬리콥터순찰·기마순찰·자전거순찰·인라인스케이트 순찰 등도 있다. 헬리콥터순찰이나 기마순찰은 일반적으로 별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순찰은 저렴한 경비로 좁은 골목길 등 순찰에 좋고, 인라인스케이트 순찰은 넓은 공원 등 차량 통행이 없는 지역 등 순찰에 장점이 있다.

당,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여성운영업소에 등에 대하여 방법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법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으로,¹⁵⁾ 지역경찰관은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진단을 실시한다. 방법진단은 관내 범죄발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거주자·관리자 등의 승낙을 받아 외부에서 점차 내부로 진단대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빠짐없이 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찰·주민역량 등 인적 요소와 비상벨·보안등 등 제반 물적 요소를 총망라하여 제한 없이 실시하되, 해당 요소에 대한 과거자료 등 고정 개념을 탈피하여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진단을 실시한다.

다. 경찰방문

경찰방문이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법진단을 하는 예방경찰활동으로,¹⁶⁾ 지역경찰관은 범죄예방 등의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예방경찰상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경찰방문을 실시한다. 경찰방문은 주민으로 부터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경찰력의 부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찰관은 방문시 용모·복장·태도를 단정히 하고 공손한 언어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방문시간·질문내용 등에 대한 신중한 배려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와 자발적인 협조를 바

15)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규칙 제2조 제2항(경찰청훈령 484호 전문개정 2006. 4.18).

16) 앞의 규칙 제2조 제1항.

탕으로 하되 답변강요·사생활간섭·경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밀탐지·방문으로 해 알게 된 사실의 누설 등이 절대로 없도록 실시한다.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하고 있다.

라. 방법홍보활동

지역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관내 치안활동 및 대책, 최근 발생범죄의 유형과 수법, 자위방법체제 및 범죄 신고요령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법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홍보의 수단으로는 지구대(파출소)별 전광판 활용 및 현수막 게시, 입간판 설치, 치안소식지·홍보전단·노약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책자형 만화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지역경찰관이 지역주민을 접촉 직접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 문안 등을 게재한다. 또한 방법홍보반을 구성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 구내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노인정, 부녀회, 반사회, 극장 막간방송, 유선방송, 전광판, 지역신문 등에 홍보한다. 그리고 지역경찰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집하는 한편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마. 협력방법활동

지역경찰관은 지역 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관할지구대(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방법활동을 하는 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학교, 부녀방범봉사대 등 자율방법조직을 운영하여 경찰과 합동

으로 활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 순찰활동과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협력방법활동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조직이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치안 참여 확대로 주민과 지역경찰관과의 유대가 강화되어 고품질의 공동치안을 생산한다. 아울러 지역경찰관은 관할지역 내 금융기관, 상가,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업주나 관리인을 상대로 비상벨, CCTV, 경비시설 등을 설치하게 설득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민간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아파트 및 상가경비원, 주차장관리인, 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근무요령이나, 사건사고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¹⁷⁾ 특히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할 구역 내의 민간경비업자의 영업소, 민간경비업무 대상시설 등을 방문하여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등 민간경비와의 유기적인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한다. 지역경찰이 믿음을 가지고 민간경비업을 육성하고 상호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확대 강화되어 지역 협력방범치안에 기여하게 된다.

제3절 지역경찰력의 방법활동능력의 한계

1. 경찰의 인력 부족

최근 산업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고도화 정보화 되어가면서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증가하고¹⁸⁾ 있어서 지역경찰의 방법활동은 더욱 어려워

17) 박현호, 앞의 책, 415면.

18)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지난 30년간 1976년 504,630건에서 2005년 1,893,896건으로 약 3.7배 증가하였고, 검거건수는 1976년 450,059건에서 2005년 1,624,522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발생건수는 지난 15년간

지고 있다. 다음의 [표 2-1]은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공포를 조성”한 중요 5대범죄 발생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발생건수는 1997년 294,569건에서 2006년 489,575건으로 195,006건 늘어나 지난 10년간 66.2%나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⁹⁾ 그러나 경찰인력은 다음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1997년 89,629명에서 2006년 95,613명으로 5,984명 늘어나 지난 10년간 6.7%로 증가하는데 그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인구 증감을 감안한 우리나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볼 때 1997년 516명에서 2006년에는 51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ECD국가(미국 뉴욕 222명·워싱턴 160명·LAPD 380명, 일본 458명, 영국·프랑스·독일 300명 전후)와 비교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3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지역경찰제는 파출소의 3교대 체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찰인력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경찰 방범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찰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찰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 현황²⁰⁾ 2006. 12. 31

1991년 728,579건에서 2005년 1,169,648건으로 60.5%증가하였고, 검거건수는 1991년 638,636건에서 2005년 931,095건으로 45.7%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12. 27면).

19)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형사), 2007. 9. 20 방문.

20)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형사), 2007. 9. 20 방문.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294,569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840	487,847	489,575

[표 2-2] 경찰의 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²¹⁾ (단위: 명) 2006. 12. 31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찰관	89,629	90,515	90,623	90,670	90,819	91,592	92,165	93,271	95,336	95,613
총인구(1만명)	4,666	4,699	4,733	4,773	4,802	4,822	4,838	4,858	4,878	4,899
1인당담당인구	516	516	518	522	526	527	523	519	513	512

2. 시설·장비의 부족 및 노후

지역경찰제는 빠른 기간 내 시행된 제도로 국가예산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선 제도 변경, 후 예산 확보의 지역경찰제 전환은 국가예산의 확보가 병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의 열악성과 장비의 부족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지구대는 기존의 1개 파출소 공간에 3-4개 파출소의 인력·장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교대 및 교양을 위해 지구대 인원 전원이 한 장소에 집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다. 아울러 탈의실·회의장소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하여 지구대의 신축, 증개

21)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경무), 2007. 9. 20 방문.

축, 리모델링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지구대 표준설계모델(Prototype)을 제작하여 지방청에 하달 주변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 개축·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예산문제 등으로 전 지구대로의 확충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대는 기존 3-4개 파출소의 기존 장비를 한지구대에서 관리 운용하다보니 기존 장비들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이들 장비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경찰 방범활동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체계·전자감시제도 및 112순찰차량 등 첨단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경찰의 대표적 장비인 순찰차는 전국에 순찰용 3,407대, 예비용206대, 감독용16대 등 총 3,629대가 운용되고 있다. 보통 1개 지구대에 3-4대, 1개 파출소에 1대 정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노후차량이 많고 고장시 대체할 예비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찰제에 맞는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확보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인 지역경찰제 활동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집회·시위 및 수익성 행사 등 타 업무에 동원

다음의 [표 2-3]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6년 간 집회·시위의 발생과 이를 관리·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인원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2001년에는 13,083건의 집회·시위가 발생하였고, 2,879,840명의 인원이 집회·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은 4,603,060명 이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0,368건의 집회·시위가 발생하였고, 2,617,893명의 인원이 집회·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이 3,652,740명이었다. 지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간 연평균 집회·시위는 11,305회 발생하였고, 2,842,666명이 집회·시위에 참여하였으며, 3,949,209명의 경찰관이 집회·시위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최근 매년 1만 1천 건이 넘는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경찰인력이 394만 명이 넘어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하여 방법활동에 투입되어야할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집회·시위 발생 및 동원경찰의 추세²²⁾ 2006. 12. 31

연도별 구분	전체 집회·시위		동원경찰력
	횟수	인원(명)	인원(명)
평균	11,305	2,842,666	3,949,209
2001	13,083	2,879,840	4,603,060
2002	10,165	2,682,857	3,550,800
2003	11,837	2,912,260	4,279,920
2004	11,338	3,034,660	3,965,760
2005	11,036	2,928,483	3,642,975
2006	10,368	2,617,893	3,652,740

다음의 [표 2-4]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6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불법폭력 시위는 2001년 215건에서 2006년 62건으로 153건 줄었고, 화염병시위는 2001년 23회에서 2006년 3회로 20회 줄었으나, 부상자는 2001년 34명에서 2006년 817명으로 783명이 늘었다. 특히 작년에도 시위대의 몸싸움이나, 각목, 쇠파이프, 돌 등의 불법시위용품이 사용된 불법 폭력 시위가 62회 발생하였고, 부상자도 817명이나 발생하여 아직도 불법 폭력

2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7, 234면.

시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양상에 직접 몸싸움 등으로 대응하려다 보니까 부상자도 계속 발생하여 경찰력이 손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상에 의한 경찰력의 손실도 범죄예방 및 검거를 위하여 방법활동에 투입되어야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표 2-4] 불법 폭력 시위 현황²³⁾(단위: 건·명) 2006. 12. 31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불법 폭력 시위		215	118	134	91	77	62
화염병 시위	횃수	23	8	14	3	5	3
	개수	2,453	457	2,223	105	99	8
부상자		304	287	749	621	893	817

다음 [표2-5]는 지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6년 간 수익성 행사에 동원된 경찰인원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2001년에는 927회의 수익성 행사에 233,860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고, 그 이후 매년 수익성 행사에 경찰관이 동원되었으며, 2006년에는 596회의 수익성 행사에 121,207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6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706회의 수익성 행사가 있었고, 143,550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최근 6년간 매년 700건이 넘는 수익성 행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4만3천 명이 넘는 경찰인력이 동원되었다. 범죄예방 및 검거를

23)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경비), 2007. 9. 20 방문.

위하여 방법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업무수행에 있어서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치안비용부담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치안비용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시키고, 국가가 경찰력을 민생치안 등 더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수익성행사에 의하여 부담되는 행사경비는 수익자의 비용에 의해 담보받아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유발자 부담원칙, Verursacherprinzip)²⁴⁾에 의거 수익자가 그 행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 경비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경비제

24) 유발자 부담원칙(Verursacherprinzip)이라고도 한다. 그 논거는 “한국에서 민간경비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에는 빠짐없이 ‘수익자 부담원칙(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을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로 소개하면서, 국가의 치안기능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질서유지나 체제수호에 한정되며, 국가구성원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은, 마치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개개인이 개인적 비용에 의해 담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및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치안업무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국가는 치안유지의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 개인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예외적인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국가의 독점적 권한으로 유보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아래에서 개개인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영위할 수 있으며, 만일 국가가 이러한 권한과 임무를 도외시 할 경우, 국가는 이미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에게 임의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명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의 피해자 보상 규정, 형법 및 기타 특별형법 등을 통해서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한 대부분의 개별적 법익을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는 공법상의 법익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개인이 책임져야 할 개인의 안전의 실체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사인이 주최하는 비수익적 행사의 경우나 지자체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성의 대규모 행사의 비용과 경비책임을 과연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주최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행정법의 법리에 근거해서 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찰법상의 위협을 야기한 자에게 비용책임을 부담시키는 논리가 더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논거이다(이성용, 독일 민간경비의 발전과 Police Private Partnership, 치안정책연구 제20호, 2006. 12, 172면),

도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수익자가 해당 경비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²⁵⁾

축구, 야구, 등의 국제 또는 국내경기, 유명 연예인의 공연 등의 경기장 또는 행사장 내외의 질서유지 업무, 교통정리(교통유도) 업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수익성과 관련된 행사의 경우가 많으므로 주최 측에서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경비를 전담하게 하고, 경찰은 유사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치하는 우발사태 대비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치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혼잡경비(행사경비), 교통정리(교통유도) 등 수익성 행사에는 수익자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찰인력의 동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는 민간경비 인력의 활용으로 경찰의 임무를 대체할 수 있고, 민간경비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활성화되면 민간경비의 인력들이 수익성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민간경비의 영업범위가 확장됨은 물론 새로운 민간 경비 수요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경비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수익자가 원하는 경비인력을 공급하게 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비 인력의 육성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간경비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 깊숙한 곳까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민간경비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치안 서비스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2-5] 수익성 행사에 경찰동원 현황²⁶⁾(단위: 명) 2006. 12. 31

25) 광채기, 수익성 행사경비 관련 경찰수당제도 도입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14, 2001.

연도별 구분	횟수	참석인원	동원경찰	자체질서요원
평균	706	20,749,839	143,550	95,126
2001	927	20,587,405	233,860	170,880
2002	947	23,222,446	84,175	78,294
2003	464	17,452,636	104,245	82,467
2004	517	16,495,561	105,523	32,639
2005	786	22,823,220	212,292	86,230
2006	596	23,917,767	121,207	120,246

제4절 방법활동능력의 강화를 위한 대책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은 치안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경찰의 인력, 시설·장비의 부족 및 노후, 집회·시위 및 수익성 행사 등 타 업무에 동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특히 지역경찰제의 전환은 지구대(파출소)의 3교대 체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경찰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경찰의 방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찰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

26)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생활안전), 2007. 9. 20 방문.

찰공무원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어, 지역경찰 인력의 부족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 요인들에 의해 지역경찰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의 한계를 보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의 예산으로 경찰의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또한 국가기능의 확대 문제²⁷⁾ 및 정부예산의 한계 문제가 따르고 있다. 최근 “경찰만이 지역치안의 전담마크맨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치안문제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responsible citizens)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²⁸⁾ 따라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노력도 민간차원의 협력방법치안이 요청된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요청에 지역경찰이 스스로 방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표2-6] “민간경비 경비원 및 허가 업종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 경찰관 수 95,613명을 초과하는 민간경비원 수 127,620명을 보유하고 있고, 치안활동의 한 영역 특히, 방법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를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활용하면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이 강화되어 지역 방법치안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에서 지역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및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

27) Martin Van Creveld를 비롯해 적지 않은 학자들이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른 중앙정부 기능의 분산화 내지는 쇠퇴가 민간경비산업 발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쇠퇴는 자연스럽게 물리적 강제력의 분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재광,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4면).

28) 박현호, 앞의 책, 91면.

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표2-6] 민간경비 경비원 및 허가 업종별 현황²⁹⁾(단위:명·개)2006.12.31

구 분	총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원	127,620	108,311	2,908	6,045	4,893	5,526
허가업종별	3,137	2,549	46	360	137	45

제3장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제1절 문제의 제기

민간경비의 업무가 방법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확대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간경비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여 주체적이고 협력적으로 지역방법활동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에 관하여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기업과 개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과 순찰업무는 주로 민간경비부문이 담당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사건 수사 활동은 경찰이 담당하는 식의 역할분담이³⁰⁾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경찰과 더불어 민간경비도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을 범죄의 불안감으로

29) 경비업체는 2,671개, 허가업종 3,137개, 경비원 127,620명이고 경비원 평균 연령은 49.4세이나 연령분포는 20-30세와 60-70세가 분포도가 높음: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생활안전), 2007. 9. 20 방문.

30) 광대경,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호, 2002.

부터 해소시키는 지역방범활동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일반국민이나 국가정책결정자들까지도 범죄예방은 국가 공권력인 경찰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각하여, 민간경비의 업무 및 역할이나 그 기능에 대해 일반국민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비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민간경비는 경비업체의 영세성(전 업체의 약90% 정도가 경비원수 100명 이하), 인력경비에의 의존성, 경비업체의 과열경쟁, 경비시장 개척의 한계, 전문성의 문제, 경비기기제조업의 지원 부실,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 경비관련 보험제도의 미비, 경비분야 연구인력 부족, 전문 관리감독기관의 부재, 경비업계의 인력난, 경비원의 최저임금이상의 보수 확보 문제, 경비원의 사회적 지위 저하, 그리고 경비원의 불법행위 등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경비는 자체적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비업체 및 허가업종, 경비원 수 등 양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 민간경비교육기관 확대 개편 등 교육제도의 정비, 첨단 기계경비 확대 등 질적 성장을 하도록 육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은 인력경비업무 중심에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대되고, 정보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기계경비업무 및 특수경비업무의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계는 아직은 바람직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찰 방범활동에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계 정립 문제,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영역 확대 문제,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 신설 운영 등이 문제된다.

따라서 민간경비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지역경찰 방범활동에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방범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협

력방법체제 정립, 민간경비 영역의 확대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신설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정립, 민간경비의 영역 확대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신설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정립

1. 지역협력방법체제 정립을 위한 정보교환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지역경찰관은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을 통하여 관할 구역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영업소, 경비업무대상시설 등을 방문하여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발생 현황은 물론 기타 중요범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역 방법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경찰관은 강도사건이나 절도사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휴대폰 대리점 등 범행 대상과 장소·시간·범죄수법이나 예방 및 검거요령 등을 설명하고, 신고 및 경보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하여 연락체계 등 협력방법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를 정립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대표·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지방청·경찰서·지구대 등에 초청하여 최근 경찰활동과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시간 수법, 그리고 범행의 특징 등에 관한 범죄정보를 설명하고, 경비업체의 112 오신고 감소 및 출동경비원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 방안, 경비원 근무요령, 공동주택 자위방법체제 보완, 주민의견 수렴 등 주기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 민간경비 관련기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관련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기관 협력위원회구성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지역경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get together)’ 즉 서로의 역할, 능력 그리고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상호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조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에 접촉이 단절되고 있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방법능력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으로 양 조직의 책임자 또는 협력위원회 구성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방범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고, 범죄사건 발생시에는 범인체포를 위한 업무역할설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³¹⁾ 민간경비 관계기관 책임자 또는 협력위원회구성 간담회 개최, 전담관 배치 등과 같은 협력체제 구축으로 조직 상호간 괴리감 없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조직에서 생겨날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하여 지역방범활동의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경찰청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이³²⁾ '07. 9. 1 현재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6개소,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기관 10개소,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기관 10개소 등 63개소가 있으나, 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경찰교육훈련 시설을 민간경

31)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0-04, 1991. 112-113면.

32) 경찰청 고시 제2005-6호('05. 12. 7)로 지정, '10. 12. 31까지 유효.

비교육에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절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영역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상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현행 경비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³³⁾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목에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³⁴⁾ 그리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

33) 여기에서 일부라 함은 경비업무중 일부 절차에 해당하는 도급이 아닌 업무 전체의 완전성을 갖춘 상태에서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계경비업무의 일부 절차인 관제만을 도급받아 행할 수는 없고 ‘감지→관제→지령→출동’ 등 기계경비업무 일련의 절차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2가입자의 업무중 1가입자 업무 전체를 도급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이란 타인(시설주)의 경비업무를 받아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경비업무를 위한 경비원의 사용은 현행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경찰청, 경비업 업무처리 매뉴얼, 2005. 8면).

34) 신변보호경비의 사례 : ㈜세빈 에이전시는 VIP 수행경호, 방송 연예인 수행경호, 외국바이어 수행경호, 법정증인 신변보호, 여성, 청소년 신변보호, 스톡 예방 및 퇴치, VIP 경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sebinguard.co.kr>); ㈜자스민 경호기획은 개인, 경제인, 저명인사, 연예인, 가족, 비즈니스맨, 행사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jasminbodgyguard.co.kr>); FTS Security는 개인 신변보호, 아동 신변보호, 여성 전문 신변보호, VIP 의전 신변보호, 각 분야 별 행사 시큐리티, 주주총회, 법정동행 시큐리티, 컨벤션 및 예식장 시큐리티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safegd.com>); 펄폼(PERFORM SECRET SERVICE)는 엔젤 보디가드 및 개인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perform119.co.kr>); (주)티알아이 인터네셔널은 OWL SERVICE(One's Whole Life), VIP 의전 경호, 신변보호, 연예인 경호를 맡고 있다(<http://www.tri.co.kr>); ㈜스톤가드는 개인 수행 경호, V.I.P 의전 경호, 주주총회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privateey.co.kr>).

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³⁵⁾ 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이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³⁶⁾ 함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15조의 2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경비업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여 민간경비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경비 4종, 혼잡경비 3종, 수송경비 2종, 신변경비 2종, 기계경비는 사업소 기계경비와 가정(주택) 기계경비가 있다.³⁷⁾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경비법상의 혼잡장소 경계업무(제2조 제1항) 및 미국의 정보경비(Information Security) 등은 우리나라 경비업법 포함시켜 민간경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³⁸⁾

35) 특수경비업무 사례 : 프로에스콤은 X-Ray검색기를 통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김포, 김해, 제주, 광주공항 등 전국 공항, 국가기관의 특수시설과 관사, POSCO CENTER, 테크노마트 등의 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proscom.co.kr>).; 시크리트 가드는 이라크 민간 건설 지원단 및 민간 기업의 신변 보호 및 종합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목표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경비원으로 하여금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고 있다(<http://www.siginc21.co.kr>).; ㈜서운STS는 한국공항공사(김포내)와 인천국제공항 외곽특수경비 및 LG-Caltex정유 등 특수경비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seoun.co.kr>) 조은시스템은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보안 운영, 보안검색, EOD, TSC 운영, 신변보호, 행사장경호 서비스, 첨단 대테러장비 공급 운영 등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joeun.com>).

36) 경비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2조.

37) 深澤賢治(ふかぎわけんじ), 警備保障のすべて, 東洋經濟新聞社, 2003. 4면.

38) 김재광, 앞의 책, 271면(일본의 혼잡장소경계업무는 ‘건축현장, 도로공사현장, 주차장 등에서 관계차량의 출입시에 일반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특정지역의 교통유도를 행

따라서 실정법인 현행 경비업법 제2조에서 명시한 민간경비의 업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규정하여 민간경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경비업무를 비롯하여, 정보경비업무, 수사지원업무, 주택경비업무, 나아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무³⁹⁾ 등을 경비업법에 포함시켜 민간경비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급진전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인 민간경비는 미국,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직업경찰관 수를 넘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상당부분 방법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차원의 사경비인 민간경비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 협력할 때 효율적인 방법활동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제4절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 신설 운영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를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를 직접 지도·감독하고⁴⁰⁾ 협

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 공항, 항만, 도로, 주택단지의 건설현장, 유원지, 행사장, 공원 등 혼잡장소 등에서 교통경비를 실시할 필요성은 크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경비는 극비로 취급되는 정보, 소유권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경비는 안전한 보관업무, 코드와 부호화, 전자정지에 의한 감시, 시대에 뒤떨어진 장치의 처분, 관심을 끄는 데이터 및 인쇄 가능한 데이터의 파괴, 혹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처분, 외부에서의 기록의 보관, 긴급한 재해방지계획에 관계되는 것도 해당되므로 도입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39) 민간조사업무로 유학생 사건 사고 조사(학위 위조 진위확인 등), 지적재산권침해조사(짜퉁 단속), 교통사고 분석(교통사고 분석사 보조 및 해외 현지 사고 조사), 항공사고조사(해외 경비행가 수지 조작등), 산업스파이조사(기업내 문서 유출 및 자사 서류 조작등), 공금 횡령(해외 도피사범조사), 이산가족 찾기(해외 입양아 찾기등), 실종자 및 미아 찾기(해외입양아 찾기등), 유전자 감식의뢰(가족 여부 확인), 해양사고조사(해외여행시 보트 추락사고, 스킨스쿠터 사고등), 민·형사사건조사(해외도피등), 기업내 부정비리조사(공금횡령등), 부동산사건조사 (해외투자 사기등), 사이버범죄조사(악성 댓글등), 마약조사(유학생 복귀시 마약 복용 여부등), 여행사 및 이주·이민자관련 사기·사건조사(신혼여행 빙자 사기등), M&A컨설팅등의 분야(외국회사의 국내 기업과의 합병등)등 광범위하다.

력하는 관리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형태는 청원경찰과 순수민간경비로 이원화되어 있다.⁴¹⁾ 그리고 민간경비업무와 청원경찰업무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담당부서도 생활안전기능과 경비기능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과거 민간경비 관련 업무는 경찰청 경비국에서 담당하였으나, 민간경비의 발전과 사실상 방범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1995년 9월에 민간경비 관련업무가 경찰청 방범국(현 생활안전국)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순수민간경비업무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도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의 업무는 ① 생활안전업무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지하철 수사대 운영지도, 산악구조대 운영지도, 방범순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 있고 ② 지역경찰업무로 각지구대·파출소의 외근업무에 관한 기획, 112순찰차 운영지도, 112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조정, 112제도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112신고센터 운영지도 등이 있으며 ③ 협력방범업무로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지도, 경비업 관련업무,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등의 업무가 있다.⁴²⁾ 그리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의 업무는 지역경찰 업무계획·조정 및 지

40) 경비업법 제24조(감독)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명령은 통상적으로 경비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감독명령이라 지칭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감독명령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감독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경비업자 등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다.

41) 이기호,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 논문집 제25집, 2005. 12. 49면.

42)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8장 제18조(경찰청훈령 제508호, 개정 2007. 7. 2).

도·감독, 지역경찰 업무계획 및 지도,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의 배치 및 이동발령,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 동원,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관 표창 제청, 지역경찰관 교양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역경찰관 근무평정 및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112순찰차 및 방법싸이카 운영, 방법을 위한 가택방문 지도, 지구대(파출소) 시달문서 조정 통제,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지하철 구내 방법출장소 운영, 경비업 관련 지도단속, 방법순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한강범죄예방 및 인명구조·수상안전에 관한 사항, 산악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2신고 접수·지령 전파·조치결과 전산입력 및 관련 장비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⁴³⁾

이렇게 민간경비업무는 경찰청 ‘과’ 업무(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및 경찰서 ‘계’ 업무(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의 많은 업무 중 1개의 업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활안전과(계)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생활안전사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민간경비업무도 분리되지 않고 여러 업무에 포함되어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은 민간경비업 관련 업무를 위해 경찰서에는 1명이 여러 업무와 중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지방청(서울)과 경찰청은 2-4명 정도의 민간경비업무 전담 경찰관이 있으나 사실상 이들도 여러 업무를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현실을 살펴보면, 방법활동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민간경비를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경찰의 민간경비 관리 전담 부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경비업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기능)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청원경찰 업무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기능)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도 경비과 경비

4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장 제28조 제2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훈령 제216호, 개정 2006. 10. 2).

계(기능)에서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의 업무는 ① 경비1업무로 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 행사경비·혼잡경비 등 일반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 유세장 및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경비, 외국공관·저 경비계획 및 지도,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비상경비실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민방위업무의 협조사항처리, 기타 국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 있고 ② 경비2업무로 경비동원 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집회시위 관리장비의 연구개발,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등이 있으며 ③ 전경관리업무로 전경관리 총괄, 전경예산 편성·배정, 전경사기관리 및 후생복지 관련사항, 의료비 운영위원회 지도, 전경관리 지도·점검, 전경기울교육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지도단속, 전경복제에 관한 업무, 정훈 순회교육 및 지도, 정훈교재 제작 및 전경지 발간, 전경 복무이탈자 수배 및 해제, 각종 선거 부재자 신고 및 우편 투표 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 그리고 ④ 전경인사업무로 전경 정원·현원 관리, 전경 임용·배치·전역 관련사항, 전경사고자 인사처리, 전경모집 및 교육, 전경 위탁교육 관련사항, 경찰대학생 기초군사교육 관련업무 등이 있다.⁴⁴⁾ 그리고 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의 업무는 다중범죄 진압대책 및 경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경비 계획 수립 및 시행, 경호경비 계획 수립 및 시행, 비상경계 및 비상소집 계획 수립 시행 및 경찰동원 운영, 외국 공관경비에 관한 사항, 경호경비 자료의 관리 및 교양에 관한 사항, 검문소 운영 및 검문검색 지도·감독, 야간통행증 발급에 관한 사항, 예비군 무기탄약과 관련된 군 협조 업무, 청원경찰의 임명제청, 청원경찰 관련업무 지도단속, 경찰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112 타격대·후속중인부대 및 후속지원대 운용, 전시치안계획 수립 및 시행,

44)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0장 제27조.

중요시설 경비의 관련업무와 지도단속, 치안상황실 운영지도 감독, 경찰관 숙소부 정리, 민방위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복무, 전투경찰순경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전투경찰순경의 후생보지 및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⁴⁵⁾

이렇게 청원경찰 업무도 경찰청 ‘과’ 업무(경비국 경비과) 및 경찰서 ‘계’ 업무(경비과 경비·작전계)의 여러 업무에 포함되어 분리되지 않고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부서의 이원적 운영체제가 필요한지 또한 업무에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관리담당 부서도 일원화하여 청원경찰도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청원주 및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은⁴⁶⁾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민간경비 제도로 볼 수 있는데, 2006. 9. 30 현재 청원경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2,184개소이고, 청원경찰은 16,57명이다.⁴⁷⁾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업은 2006. 12. 31 현재 경비업체는 2,671개 업체, 허가업종은 3,137개 업종, 경비원은 127,6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관리능력도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제는 청원경찰업무도 순수민간경비에 흡수하고, 민간경비를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취급하는 생활안전과에서 분리하여 민간경비를 전담할 수 있는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업 관련 업무를 위해 지방청(서울)과 경찰서는 독립된 ‘계’ 단위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경찰청은 ‘과’ 단위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4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장 제30조 제2항.

46) 청원경찰법 제2조(일부개정 2005.08.04 법률7662호).

47) 김재광, 앞의 책, 262면.

다.⁴⁸⁾

경찰의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 신설 운영은 경찰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경비의 지도·감독, 협력은 물론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찰 전담부서에서 직접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방법을 기획하고, 12만 경비원을 잘 관리 활용하여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담부서의 경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 부단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뢰의 바탕위에서 민간경비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경비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청원경찰제도는 현재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원과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경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무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지만, 조직적인 지휘체계, 법집행의 권한,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청원경찰의 배치요청권 및 임용, 퇴직금과 보수, 무기 휴대, 신분과 책임의 한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시설물 내에서의 업무수행상 갈등과 기계경비시스템 설치와 운용 및 관리 보수, 유지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제도를 민간경비제도에 흡수 통합하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통합 내지 단일경비업법 적용을 하고, 경찰업무의 기능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8) 일본경찰에서는 1997년 4월 1일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에서 시큐리티 대책실을 설치하고 실장(경정)이하 9명이 업무를 전담한 후 현재는 과체제로 확대 개편되었다(日本 警察 白書, 2001).

49)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엑스퍼트, 2003. 226-227면.

결론적으로 청원경찰업무를 포함한 민간경비업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띤 경찰이 올바르게 수준 높게 민간경비를 지도점검하고⁵⁰⁾ 협력을 한다면 지역방법활동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민간경비의 활성화는 물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제5절 소결

민간경비를 지역 방법활동에 활용하려면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를 정립하고,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경찰관은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을 통하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영업소, 경비업무대상시설 등을 방문하여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발생 현황은 물론 중요범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경비 관련 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기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역경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교환, 간담회 개최, 전담관 배치 등과 같은 협동체제 구축으로 조직 상호간 괴리감 없이 친밀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조직에서 생겨날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하여 지역방법활동의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0) 실질적인 경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와 출장소, 경비원 배치가 된다. 주요점검내용은 근무상황과 교육훈련상황 등이며 주의할 것은 점검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경찰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관할서의 지도감독은 경비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진출하여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켜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경비업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여, 일본 경비업법상의 혼잡장소경계업무(제2조 제1항) 및 미국의 정보경비(Information Security) 등의 경우와 같이 민간경비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경비업무를 비롯하여, 정보경비업무, 수사지원업무, 주택경비업무, 나아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무 등을 경비업법에 포함시켜 민간경비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지역방법에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찰의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청원경찰업무도 순수민간경비에 흡수하고, 민간경비를 여러 업무를 취급하는 생활안전과에서 분리하여 민간경비만을 전담할 수 있는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업 관련 업무를 위해 지방청(서울)과 경찰서는 독립된 ‘계’ 단위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경찰청은 ‘과’ 단위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의하여 전문성을 띤 경찰이 수준 높은 민간경비지도와 올바른 감독을 한다면 지역방법활동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민간경비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제4장 지역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방안

제1절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한 방법활동의 핵심은 순찰활동이다. 그러나 경비업 이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

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즉, 사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 재산 및 신체자유의 보호를 위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이므로 지역경찰이 임의로 민간경비의 인력·장소·시간 등 제반 경비요소에 통제·변경을 가하여 민간경비를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합동)순찰근무에 활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⁵¹⁾ 그러므로 지역경찰과 민간경비가 한 지역을 중복 순찰하는 것 보다 민간경비는 민간경비가 책임지고 활동하는 담당 시설·지역 등 일정지역을 순찰하고, 지역경찰은 사건·사고 다발 우범지역 등을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순찰하면서 국가 중요시설, 공공건물, 수익사업을 하는 백화점·금융기관, 공원 등이나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민간경비 시설 및 지역을 연계하여 순찰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연계 순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복적인 순찰 보다는 일정 지역을 양 조직이 분담함으로써 같은 시간과 인원으로 보다 많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어 방법활동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지역경찰은 민간경비와의 연계 순찰을 통하여 상호 방법활동 관련 각종 자료나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여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 조직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 지역방법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상호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연락체계 구축 방법으로는 민간경비원의 무전기를 관할 지구대 근무자가 청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시설주와 협조 민간경비원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확보 지구대에 비치하거나, 민간경비 경비실 전화기 옆에 경찰서, 관할지구대(파출소) 전화번호를 부착 활용하고, 민간경비원 소유 휴대폰에 지구대번호를 단축키로 입력하여

5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여 일정지역의 순찰을 민간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합동)순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계경비업체에 대하여는 거점근무를 병행하도록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통보하는 등의 협력 순찰을 한다.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범죄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절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교통정리 등 민간경비 전담

혼잡경비(행사경비)는 경축·기념 행사·각종대회·제례·종교의식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일시에 모인 미조직 군중의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30조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혼잡경비를 민간경비의 업무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민간경비의 활성화에 바람직한 제도로 보여 진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등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인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국제 또는 국내경기, 유명 연예인의 공연 등의 행사장에도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장 또는 행사장 내외의 질서유지 업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수익성과 관련된 수익성 행사의 경우가 많으므로 주최측에서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행사장 혼잡경비와 주변 교통정리(교통유도) 등을 전담하게

하면 효율적인 대민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찰은 유사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치하는 우발사태 대비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3절 시설·호송·기계경비의 민간경비 활용 확대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경비는 국가기관·외국기관·국영기업·언론기관·산업시설·금융기관·상가·학교·은행·주택·빌딩·주차장·행사장·유원지·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설경비는 경비산업중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민간경비 서비스이다. 시설경비 중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인 은행·농축협·수협·신협 등 금융기관, 금은방, 백화점, 영업장 및 대리점, 창고, 공원 등에 대하여는 민간경비가 전담하도록 이관하여야 하고,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외국기관·공항·국영기업 등에도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원 등을 전담 배치하거나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⁵²⁾

경비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는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

52) 시설경비업무의 사례 : 가드피플(Guard people)은 경비사업분야로 경호, 수행기사, 시설경비, 도청검색, 호송경비, 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경비로 아파트와 개인주택, 백화점과 할인마트, 연구소, 관공서, 호텔, 병원, 그 밖의 학교, 회사 및 공장, 특수업체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guardpeople.co.kr>); 에스코트(Escort)는 시설경비시스템을 통해,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중요 시설보안, CCTV설치 등의 관공서 경비, 빌딩과 주택 경비, 경기장 안전, 그 밖에 보디가드, 호송업무, 탐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escortkorea.net>); 한국팀경호는 출입통제와 감지, 안내도우미, 내방객 및 귀빈안내, 도난방지 및 경계업무, 사택과 관공서 경비, 경기장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bgteam.co.kr>); 참시큐리티는 시설물 경호, 행사 경호, 컨벤션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http://chamsecurity.co.kr>).

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금융기관의 현금호송은 청원경찰 및 은행경비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자치부의 투표용지 및 투표함 수송, 교육부의 시험지 수송, 문화관광부의 문화재 수송 등 정부기관의 중요 물품 수송과 한국은행의 현금 수송 등은 경찰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민간경비를 활용하는 것이 민간경비의 전문성 제고와 경찰업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호송경비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고객창출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⁵³⁾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의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8조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대응체제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제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오경보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경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최첨단 기계경비장치가 개발되고 야간·휴일의 무인건물 증가,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인가정의 증

53) 호송경비업무의 사례 : ㈜발렉스코리아는 현금수송, 귀금속 수송, 특수용역, 귀중품 택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valex.co.kr>); KOSESS는 현금 수송 및 호송 업무, 귀금속 전시장 귀중품 운반, 보관 경호 업무, 우표, 유물, 미술품, 경호 경비 및 호송 업무, 귀금속 업계 신변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kosses.com>); 시큐리티 케이비 역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기자재, 화약류, 박물관 유물 등 안전 운송이 필요시 되는 물품 호송경비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securitykb.co.kr>); 블랙베어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2001blackbear.com>).

가 등에 의하여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경비업종에 비하여 첨단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경비업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계경비 137개 업종에 경비원 수 4,830명으로⁵⁴⁾ 성업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성장이 예상되는 민간경비 산업분야이다.

기계경비는 은행 등 금융기관, 금은방 영업장 및 대리점 사무실 등이 주요 고객이었으나, 최근 범죄의 공포로 부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 되어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에 까지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

기계경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경보와 지각출동이다. 오경보의 주요 원인은 경보시스템 가입자의 오조작이 가장 많고, 경비시스템의 설치 및 서비스를 행하는 업체 직원의 잘못에 의한 오조작, 기기의 결함 등이다. 따라서 오보율과 지각출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설명, 완벽한 기계설계,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 제재 조치 등의 기계경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하여 기계경비 산업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⁵⁵⁾

제4절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및 집단민원 등에 민간경비 활용

54) <http://www.police.go.kr>(통계자료실, 생활안전), 2007. 9. 20 방문.

55) 기계경비업무사례 : (주)대민보안공사는 주택, 은행, 공장, 사무실, 상가, 학교 등의 무인경비시스템, 공공기관 등의 용역경비, CCTV, 주차장관리, 소방용역, 빌딩관리 업무, 통신보안시스템을 비롯한 동화상, 다중화상, 미디어이트 등의 통신분야 경비, A.COM 무인자동화경비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http://www.a-com.co.kr>).; (주)에스오케이 무인기계경비 및 사고 발생시 지역 순찰 대처차량이 출동하여 현장대응 및 수습을 담당하고 있다(<http://www.sok.co.kr>).; (주)광명통신안전은 최신형 출입통제 카드Key, 각종 도난경보 D.V.R CCTV설치 등 무인 기계경비시스템을 통한경비,화상경비 Watch-Q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kmsecurity.co.kr>).; (주)화인시스템은 전자 보안 시스템을 통한 기계경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fince.co.kr>).; ADT/CAPS는 2중 관제 시스템, CDMA 무선 통신망 설치 사용, 통합 콜센터 운영, 보급형 홈 시큐리티, 비상통보서비스, 인질대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caps.co.kr>).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장 경비 등에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행사장 혼잡경비를 전담하게 하면, 행사장 내외의 혼잡경비는 물론 지역주민 및 외부참석자의 안내,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정리 등 효율적인 대민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분쟁이나 위험 및 기피시설 분쟁 등에 있어서 시설 및 사업자 측에서 민간경비를 활용하여 분쟁을 대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제5절 소결

지역방범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방안으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 등은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경비의 민간경비 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및 집단민원에 민간경비의 활용 등으로 이를 지역방범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은 지역방범활동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민간경비는 사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 재산 및 신체자유의 보호를 위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이므로 지역경찰이 임의로 민간경비의 인력·장소·시간 등 제반 경비요소에 통제·변경을 가하여 민간경비를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순찰근무에 활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경비는 민간경비가 책임지고 활동하는 담당 시설·지역 등에서 일정지역을 순찰하고, 지역경찰은 사건·사고 다발 우범지역 등을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국가 중요시설, 공공건물, 수익사업을 하는 백화점·금융기

관, 공원 등이나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민간경비 시설 및 지역을 연계하여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일정 지역을 양 조직이 분담하여 같은 시간과 인원으로 보다 많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어 방법활동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행사경비)·교통정리(교통유도) 등은 민간경비가 전담하여야 한다. 수익성과 관련된 경기장 또는 행사장 내외의 질서유지 업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수익성과 관련된 행사의 경우가 많으므로 주최측에서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경비를 전담하게 하고, 경찰은 유사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치하는 우발사태 대비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설경비·호송경비·기계경비의 경우도 수요와 공급을 창출시켜 민간경비가 전담하게 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행사인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등이나 지역개발사업관련 분쟁이나 위험 및 기피시설 분쟁 등 집단민원에 대비한 경비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시설 및 사업자 측에서 민간경비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5장 지역방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법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를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범죄 공포를 해소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지역방법활동은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법·제도의 정비, 기구설치 등 민간경비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인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기계경비업의 내실화 등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⁵⁶⁾

제2절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경비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비업법에 규정된 모든 민간경비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민간경비원이기 때문이다. 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원 명부에 등재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말한다.⁵⁷⁾ 경비업법은

56) 본 연구에서 제외된 민간경비업에 대한 허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 경비업법 제3조(법인)에서는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만이 경비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와 자격요건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개선책으로 경비업체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경비관련 학력과 경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고, 설립 후에는 매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하여 허가 후에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허가요건의 구비 또는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실업체, 명의 대여업체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없고 특히 변경허가시는 최장 9년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민간경비업체가 난립될 시 법으로서의 구체적·즉응적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7조 제1항 경비업자의 의무에서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된다”고 경비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찰작용에 의한 경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경찰에 의한 경찰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경비 수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조직에 의한 경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안전이나 재산보호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수 있으므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제기될 때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당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실력행사만이 허용된다. 또한 민간경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인으로서의 경비원은 체포할 권한을 가질 뿐이며 체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⁵⁷⁾

독일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세가지로, 첫째는 보편적 권리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공격적 긴급피난과 방어적 긴급피난, 임시체포 등이며, 둘째는 경비사용주체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권리로 점유보호권(민법 제859조 및 860조), 청구권자의 자력구제권(민법 제

57) 경비업법 제2조(정의)제3호에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따라서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8) 한신만,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문제점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정노총 제41권 통권55집, 2006. 236-237면.

229조 이하), 가택관리권, 그리고 세째로 개별법에 의한 고권적 권한 수탁으로 특별법의 규정을 통해 민간경비원이 국가의 고권적 임무를 수탁 받아 공법상의 행위형식을 통해서 특정한 위험방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⁵⁹⁾ 고권적 권한수탁에 의해 독일에서는 연방군사시설의 보호, 항공안전에 관한 고권적 권한 행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⁶⁰⁾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의 실력행사, 질문에 기초한 불심검문, 수색(검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장구 등)는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고 장구의 종류만 열거하고, 이 또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일본의 경우처럼 예방용·제압용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일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비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호신용구의 휴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호신용구는 경계봉으로서 경비원을 방호하는 기능과 범인을 제압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⁶¹⁾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분사기의 휴대)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비원이 분사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비업법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59) 이성용,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경호경비연구 1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12면.

60) 이성용, 고권적 권한수탁을 통한 사인의 치안활동, 경찰학연구 제6권 제3호 경찰대학, 2006, 109-111면.

61) 深澤賢治(ふかざわけんじ), 警備保障のすべて, 東洋經濟新聞社, 2003, 75-76면.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⁶²⁾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⁶³⁾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특수경비원의 경우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기관리와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같은법 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8항은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비업법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제4항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인질·

62) 경비업법 제2조 4호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63)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이라 하고,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가 법리상의 문제가 없고 엄격한 무기관리 수칙이나 각종 안전장치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총기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⁶⁴⁾

제3절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1. 전문화의 필요성

지역방범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경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경비인력을 제공하려면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전문경비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경비의 전문경비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만 민간경비 산업이 전문화되어 민간경비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우수인력의 채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64) 한신만, 앞의 논문, 241면.

2. 우수인력의 채용

민간경비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적절한 보수와 근무환경 등이 충족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 민간경비업계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고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용 전 민간경비원의 선발과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발과정은 면접, 경력조사, 전과조회, 신원조사, 그리고 지원동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현행 민간경비원 채용에 있어서는 선발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생략됨으로써 자질 문제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의 지문검사를 비롯하여, 신원조회작업에는 범죄기록조사, 경력조사, 병력조사, 신용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접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원동기나 경력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확고한 직업관을 조사하여 경비에 적합한 인력을 뽑아야 한다. 한국경비협회 및 민간경비업체들은 민간경비원 관리방안으로 ‘개인별 활동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경비업체간 정보를 교환하며, 또한 경력을 인정하여 우수한 인력의 재 충원을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경비 관련 산업이 영세하고 대학졸업자와 같은 고급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방법기기와 방법설계 등의 전문분야 정도에서 대졸 수준의 경비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경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경비원 개인의 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그리고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 개설된 경비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들을 전문경비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급인력의 민간경비로의 충원이 확산될 경우 앞으로 고객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민간경비 산업의 해

외시장 진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3. 체계적인 교육훈련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의 문제이다. 경비원의 업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직업이며, 경비원에게는 경비 중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경비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려면 일정수준의 전문지식과 대처능력을 바탕으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⁶⁵⁾

현행 경비업법과 경비업법시행령은 경비원의 유형에 따라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제1항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시행령은 제18조에서 일반경비원에⁶⁶⁾ 대한 교육이 규정되어

65) 이백철외5인, 민간방범역량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방안,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제11집, 1995. 176면.

66)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항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있고, 제19조에서 특수경비원에⁶⁷⁾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경비 교육은 경비업법 제27조제2항(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비업시행령 제31조제2항(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법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경비업법 제13조제1항(경비원 신입교육), 경찰청고시(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고시)⁶⁸⁾ 등을 법적 근거로 진행한다.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입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제2항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입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항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67) 경비업법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항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제2항 "삭제", 제3항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68) 경찰청고시 제2005-6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고시, 2005년 12월 7일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주) 에스텍시스템, (사)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 (사)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주) 에스원 연수원, 대경대학교, 경운대학교},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기관{(주) 에스텍시스템, (사)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 (재) 한국사격진흥회, (주) 조은시스템, (사) 한국경비협회, (주) 에스원 연수원, 재능교육 연수원, 대경대학교, 경운대학교, 경남대학교},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기관(서강직업전문학교, (재) 한국사격진흥회, (사) 한국직업연구진흥원, (사)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주) 삼구개발, (주) 조이에듀넷, 경기대 서울사회교육원,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명지대 사회교육원, 서울에스티에스(주), 신천개발(주), (주) 에스텍시스템, (사)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 (주) 조은시스템, 용인대학교, 경기대 수원사회교육원, 경원대학교, (재) 한국산업교육원, 명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경비원 교육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경비원의 신입교육시간은⁶⁹⁾ 1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은⁷⁰⁾ 경비원 배치 전에 80시간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규상으로 교육훈련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경비원으로서 경비서비스나 보안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업법 규정에 맞추어 각기 경쟁 속에서의 경비업체의 위상을 위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이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경비원 자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 근무대체인력 부족, 경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관 부족 등으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이 거의 대부분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비업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민간경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민간경비원이나 무인경비시스템

지대 자연캠퍼스 사회교육원, (주) 대신, 의정부제향경우회, 인천전문대, 주성대학교, 충청대학교, 재능교육 연수원, 중부대학교, 해천대학교, 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동우대학교, (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 대구산업정보대학교, 현대 TMS(주), 전주기전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순천청암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도립남도대학교, 김천대학교, 경운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서라벌대학교, 마산직업전문학교, 경남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69)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 배치후 1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0) 특수경비원 신입교육대상은 특수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이는 경비원 배치 전에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템이 설치된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이 야기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경비원들이 경비계약을 맺은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일반시민들의 이익이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인권, 개인사생활 보호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민간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한 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⁷¹⁾ 그리고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기본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공통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각 경비업무의 내용에 따른 특성화된 업무별 교육도 강화시켜야 한다. 즉, 기본교육훈련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업무별로 구분하여 공통적인 과목외에 각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 경비수요인 컴퓨터 관련기밀, 신용추적관리, 민간조사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전문교육기관 설립과 함께 민간경비업무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 민간경비교육과 더불어 민간경비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은 경비원의 질적 향상으로 전문성의 발휘와 신뢰성이 담보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민간 경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경비원에 대한 질적 저해 요인의 하나인 저임금의 해소와 활동영역의 확대 등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전문경비인력이 양성되어 민간경비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방법활동 능력이 제고되고 범죄의 공포로부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방법치안이 확립될 것이다.

71) 한신만, 앞의 논문, 243-244면.

4. 경비지도사제도 및 경비원 자격증제도의 활성화

가. 경비지도사 제도의 활성화

경비지도사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서⁷²⁾,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⁷³⁾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등을 수행한다.⁷⁴⁾

따라서 민간경비원을 전문경비인력으로 양성하려면 민간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를 훌륭히 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경비지도사제도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을 하도록 하고, 업체마다 반드시 법정규모의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경비지도사제도는

72)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항은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제9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44시간의 기본 교육을 의미한다.

73) 경비업법 제2조(정의)제2호에 “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4)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항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제3항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75)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제1항은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업법시행령[별표 3] <개정 2003.11.11>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경비지도사(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민간경비원의 전문적 업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제도는 1976년 9월 20일 민간경비제도를 제도화하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경비지도사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경비지도사 합격인원은 총 13,790명으로 경비업체에 배치되어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제7회 경비지도사 합격자 중 56.2%가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 나타나 고학력자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⁷⁶⁾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경비원들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정하여진 교육을 실시하며,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또한 일반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비실기 교육, 경비업법 및 경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각종 법령 교육, 경비원 교육시 필요한 교육기법, 경비업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

-
-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 76)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183-184면.

술에 관한 교육, 일반경비지도사로서 필요한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계경비관리교육을 계획, 실시,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기계경비지도사 과정을 강습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기계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및 기계경비업무 실시예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 기계경비 장치 및 운용과 기획, 설계에 관한 교육, 경비원 교육시 필요한 교육기법, 경비업무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 기계경비지도사로서 필요한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지도사의 자격, 종류, 임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제도에 있어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업무전반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업무이므로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범죄예방론이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에서⁷⁷⁾ 누락되어 있고,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한 재직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⁷⁸⁾ 따라서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에 있어서 방법론 및 범죄예방론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한 재직자에 대하여도 일정시간 직무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경비원 자격증제도의 활성화

77) 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 2]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에 의하면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모두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이며, 2차 시험에 있어서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및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및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78) 한신만, 앞의 논문, 227-228면.

경비업법에 규정된 모든 민간경비 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민간경비원이다. 그리고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신첨단 장비에 의한 기계경비가 확대되어도 기계의 사용·점검 및 출동은 민간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민간경비원의 전문성과 자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비원의 자격증제도 활성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제도가 없다. 따라서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여, 현재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경비인력을 제공하려면 경비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경비업법은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고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고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벌금, 구류 등의 전과자도 현행법규상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론과 실무가 포함된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세분화·등급화한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은 전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경비원을 육성하고, 기술과 지식 축적을 통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함께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통한 민간경비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증의 종류에는 시설경비, 총기소지, 경호경비, 호송경비, 교통유도, 검색사, 컴퓨터설비안전관리사 외에도 공인 탐정과 관련한 각종의 전문자격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⁷⁹⁾

일본의 경우 1992년 제정된 ‘방범설비사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범설비사’ 자격증 소지자가 1995년 말에 이미 3,000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수백 명씩이 응시 합격하고 있다.⁸⁰⁾

미국의 경비원 면허증제도 그리고 일본의 경비원 국가검정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민간경비도 업무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격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가의 중요시설 경비, 핵 물질의 수송 또는 요인경호 등 전문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경호경비전문가, 특수경비전문가, 대테러 전문가,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자격증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⁸¹⁾

제4절 기계경비업의 내실화

1. 문제의 제기

지역방범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업을⁸²⁾ 내실화하여야 한다. 기계경비는 범죄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고

79) 안황근, 민간경비원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비협회, 2005. 93면.

80) 정진환, 경비업법개론, 백산출판사, 2004. 250면.

81) 박준식, 민간 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110면.

82) 우리나라의 기계경비업은 1980년 8월 1일 (주)한국안전시스템(현재의 에스원)이 일본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범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인적경비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여 비용이 절약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야간·휴일의 무인건물 증가,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인가정의 증가 등에 의하여 기계경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 금은방, 영업장 및 대리점, 사무실,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에 까지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모두 지역경찰 방법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계경비가 내실화 또는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역방법은 튼튼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경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경보문제와 민간경비원의 지각출동 문제이다. 오경보로 인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쓸데없는 헛출동은 경찰인력과 장비 등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오해를 초래하여 상호 불신하는 대표적인 갈등요인으로 협력방법체제 구축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에서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기계경비 대응체제관련 지각출동(능장출동)문제 및 오경보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계경비의 대응체제 및 오경보 문제

경비업법 제8조(대응체제)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비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에서는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SECOM사와의 합작투자를 정부로부터 인가받고, 1981년 7월 1일 최초의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출발하였다(박병식, 기계경비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98-6, 1998).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입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은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금은방, 은행, 휴대폰대리점, 편의점 등에 침입하는 절도범 등은 사전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현장을 수없이 답사하여 범행을 하기 때문에 범행후 2-5분이면 범죄를 완료하고 도주한다. 따라서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란”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일본 경비업법(최종개정 평성14년 11월 22일 법률 제108호) 제11조의7(즉응체제의 정비)은 “기계경비업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지국에서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 신속히 현장의 경비원에 의한 사실의 확인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경비원, 대기소(경비원이 대기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차량 기타 장비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경보즉응체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의 경비택시 경우, 택시회사가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비업을 겸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된 전문적인 민간경업체가 아닌 택시업자가 부업으로 민간경비를 하는 기계경비시스템인데도 침입 경보 후 2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³⁾

한편 우리나라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에는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도착 후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경비원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사

83) 박주현, 민간경비실무론, 학문사, 2004. 99면(일본의 경비택시 시스템은 1989년 6월 29일자로 일본 운수성 지역교통국이 전국의 지방운수국에 하달한 “택시사업자가 행하는 구원사업에 관하여”라는 지침에 의해 택시회사가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비업을 겸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관련 경비택시의 20분내 출동규정 등 경비택시 전반에 관한 운수성의 규정이 경비업법에 삽입되었다).

실상 임무를 끝낸 것으로 인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경비업법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에는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경보율은 심각할 만큼 높은 편이다.

오경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경보시스템 가입자의 오조작이 가장 많고, 경비시스템의 설치 및 서비스를 행하는 업체 직원의 잘못에 의한 오조작, 기기의 결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별한 사례로는 감지기의 민감성으로 고양이, 쥐 등의 동물침입이나 동물의 체온과 환풍기의 전자파에서도 경보가 울리고, 점포 셔터에 취객이나 행인들이 기대거나, 신문투입 등 미세한 충격에도 경보기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계경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계의 기술적인 부분을 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기계경비에 있어서는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경찰 및 민간경비의 인력·시간·비용의 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⁸⁴⁾ 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 제1항 3호에서⁸⁵⁾ 오보율이 높은 경비업체에 대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과태로 부과 외에 다른 벌칙규정이 없어 오경보의 방지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3.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 문제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

84) 김재광, 앞의 논문, 148면.

85) 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1항제3호에는 “제9조제1항(오경보의 방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 공식·비공식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외관상으로 성능확인이 불가능한 규격 미달의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문제점, 특히 오경보 문제 등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비관련 분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⁸⁶⁾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비시스템이 각 경비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무규격 제품은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객의 시설에 대한 충분한 방법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경보 출동의 누적 및 경비회사의 장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결코 이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⁸⁷⁾

인증제도의 한 예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가 있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83호]”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

86) 방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는 관련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국내시장에 시판하고자 형식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87) 김재광, 앞의 책, 285면.

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제7항은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항은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⁸⁸⁾ 그러나 경비업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경비회사에서 선정한 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내실화방안(대응방안)

경비업법은 제8조에서 기계경비의 "대응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오경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하여 가입자인 고객

88) 그리고 같은법 제37조에는 "형식승인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의 입장에서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와 대응체제의 강화 및 기계경비업의 활동범위와 출동시간의 단축, 도착 후의 확인·연락·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입법화하고, 오경보율이 높은 경비업체에 대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과태로 부과 외에 오보여부 확인 후 통보 조항도 깊이 검토하여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경비업자 및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제 등에 관한 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범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등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계경비업의 허가 기준, 허위선전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선 지구대(파출소)와 기계경비업체간 대표적인 갈등요인이기도 한 기계경비의 지각출동(능장출동) 및 오경보 등 상호 불신을 해소하여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방범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월(매주) 정기적으로 강·절도 등 범죄 유형별, 금융기관·금은방·24시간 편의점·휴대폰대리점·병의원·미용실 등 장소별, 주간·야간·심야 등 시간대별로 비상벨을 작동하여 출동시간, 휴대장비, 조치사항 등에 관한 FTX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소결

지역방범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기계경비업의 내실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여러 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자들로 방범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구

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의 실력행사, 질문에 기초한 불심검문, 수색(검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민간경비의 방법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경비인력을 제공하려면 경비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전문경비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민간경비 산업이 활성화되어 민간경비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우수인력의 채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경비원 개인의 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그리고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임용 전 민간경비원의 선발과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경비인력의 기본교육훈련은 시설·신변 보호·호송·기계·특수경비 등 업무별로 구분하여 공통적인 과목외에 각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비업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 경비수요인 컴퓨터 관련기밀, 신용추적관리, 민간조사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원을 전문경비인력으로 양성하려면 민간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를 훌륭히 양성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제도에 있어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업무전반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업무이므로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에서 누락된 방법론 및 범죄예방론이 포함하고, 현재 흡결되어 있는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한 재직자에 대하여도 일정시간 직무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신첨단 장비에 의한 기계경비가 확대되어도 기계의 사용·점검 및 출동은 민간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민간경비원의 전문성과 자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비원의 자격증제도 활성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제도가 없다. 따라서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여, 경비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격증의 종류에는 시설경비, 총기소지, 경호경비, 호송경비, 교통유도, 검색사, 컴퓨터설비안전관리사 외에도 공인 탐정과 관련한 각종의 전문자격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지역방범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업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기계경비는 범위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범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야간·휴일의 무인건물 증가,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인가정의 증가 등에 의하여 기계경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 금은방, 영업장 및 대리점, 사무실,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에 까지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모두 지역경찰 방범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계경비업이 내실화 또는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역방범은 튼튼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경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경보문제와 민간경비원의 지각출동 문제이다. 경비업법은 제8조에서 기계경비의 “대응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오경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하여 가입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와 대응체제의 강화 및 기계경비업의 활동범위와 출동시간의 단축, 도착 후의 확인·연락·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입법화하고, 오경보율이 높은 경비업체에 대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과태로 부과 외에 오보여부 확인 후 통보 조항도 검토하여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경비업자 및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방범기기에 대한 형식 승인제도 등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와 기계경비업체간 대표적인 갈등요인이기도 한 기계경비의 지각출동(능장출동) 및 오경보 등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방범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기계경비업체간 매월(매주) 정기적으로 강·절도 등 범죄 유형별, 금융기관·금은방·24시간 편의점·휴대폰대리점·병의원·미용실 등 장소별, 주간·야간·심야 등 시간대별로 비상벨을 작동하여 합동 FTX를 실시하고 출동시간, 휴대장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결론

지역경찰이 방법활동능력의 한계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방범치안서비스를 창출하여 제공하려면 방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 방법활동능력을 점검해 보고,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및 활용 방안, 그리고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이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지역 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및 활용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완벽한 지역 방범치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의 한계와 그 대책으로 민간경비와 협력방법의 필요성 문제이다. 지역경찰의 방법활동능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은 치안수요에 부족한 경찰의 인력, 시설·장비의 부족, 집회·시위 및 수익성 행사 등 타 업무에 동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찰제의 전환으로 지구대의 3교대 체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 되어, 지역경찰 방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찰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경찰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에 의해 지역경찰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족한 경찰인력과 장비를 보완 지역경찰 방법활동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민간경비의 활용이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요청에 지역경찰이 스스로 방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의 경비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간경비를 지역 방법활동에 활용하려면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를 정립하고, 지역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경찰관은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을 통하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영업소, 경비업무대상시설 등을 방문하여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발생 현황은 물론 중요범죄에 대해서도 상호 구체적인 범죄정보교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경비 관련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기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역경찰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교환, 간담회 개최, 전담관 배치 등과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경비업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여, 민간경비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통경비업무를 비롯하여, 정보경비업무, 수사지원업무, 주택경비업무, 나아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무 등을 경비업법에 포함시켜 민간경비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방법에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찰의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청원경찰업무도 순수민간경비에 흡수하고, 민간경비를 여러 업무를 취급하는 생활안전과에서 분리하여 민간경비만을 전담할 수 있는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업 관련 업무를 위해 지방청(서울)과 경찰서는 독립된 '계' 단위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경찰청은 '과' 단위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민간경비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의하여 전문성을 띤 경찰이 수준 높은 민간경비지도와 올바른 감독을 한다면 지역방법활동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셋째로, 지역방법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수의성과 관련된 혼잡경비 등은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경비의 민간경비 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및 집단민원에 민간경비의 활용 등으로 이를 지역방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은 지역방법활동능력을 향상시킬 것

이다. 민간경비는 사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 재산 및 신체자유의 보호를 위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이므로 민간경비는 그들이 책임지고 활동하는 담당 시설·지역 등에서 일정지역을 순찰하고, 지역경찰은 관할지역내 사건·사고 다발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면서, 국가 중요시설, 공공건물, 수익사업을 하는 백화점·금융기관, 공원 등이나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민간경비 시설 및 지역을 연계하여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일정 지역을 양 조직이 분담하여 같은 시간과 인원으로 보다 많은 지역을 순찰할 수 있어 방법활동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교통정리 등은 민간경비가 전담하여야 한다. 수익성과 관련된 경기장 또는 행사장 내외의 질서유지 업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수익성과 관련된 행사의 경우가 많으므로 주최 측에서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경비를 전담하게 하고, 경찰은 유사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치하는 우발사태 대비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호송·기계경비의 경우도 수요와 공급을 창출시켜 민간경비가 전담하게 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행사인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등이나 지역개발사업관련 분쟁이나 위험 및 기피시설 분쟁 등 집단민원 대비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시설 및 사업자 측에서 민간경비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로, 지역방법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활동에 관한 규제,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기계경비업의 내실화 등이 중요하다.

민간경비원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여러 업무를 최 일선에서 수행하는 자들로 방법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을 뿐, 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의 실행행사, 질문에 기초한 불심검문, 수색(검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의 지역방법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경비인력을 제공하려면 경비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화된 전문경비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민간경비 산업이 활성화되어 민간경비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우수인력의 채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경비원 개인의 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책임감, 그리고 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임용 전 민간경비원의 선발과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경비인력 기본교육훈련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업무별로 구분하여 공통적인 과목외에 각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비업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경비수요인 컴퓨터 관련기밀, 신용추적관리, 민간조사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원을 전문경비인력으로 양성하려면 민간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를 훌륭히 양성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제도에 있어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업무 전반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업무이므로 경비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에서 누락된 방법론 및 범죄예방론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흡결되어 있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재직자에 대하여도 일정시

간 직무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최신첨단 장비에 의한 기계경비가 확대되어도 기계의 사용·점검 및 출동은 민간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민간경비원의 전문성과 자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비원의 자격증제도 활성화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제도가 없다. 따라서 경비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여, 다양하고도 전문화된 민간경비업무 분야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경비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종류에는 시설경비, 총기소지, 경호경비, 호송경비, 교통유도, 검색사, 컴퓨터설비안전관리사 외에도 공인 탐정과 관련한 각종의 전문자격제도가 검토될 수 있다.

한편 민간경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업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기계경비는 범죄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범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야간·휴일의 무인건물 증가, 사회고령화에 따른 노인가정의 증가 등에 의하여 기계경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 금은방, 영업장 및 대리점, 사무실,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에 까지 고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모두 지역경찰 방법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계경비가 내실화 또는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역방법은 튼튼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경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경보문제와 민간경비원의 지각출동 문제이다. 경비업법은 제8조에서 기계경비의 “대응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오경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하여 가입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와 대응체제의 강화 및 기계경비업의 활동범위와 출동시간의 단축, 도착 후의 확인·연락·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입법화하고, 오경보율이 높은 경비업체에 대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과태로 부과 외

에 오보여부 확인 후 통보 조항도 검토하여 입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경비업자 및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방범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등 기계경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와 기계경비업체간 대표적인 갈등요인이기도 한 기계경비의 지각출동(능장출동) 및 오경보 등 상호 불신을 해소하여 협력방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방범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 조직간 매월(매주) 정기적으로 강·절도 등 범죄 유형별, 금융기관·금은방·24시간 편의점·휴대폰대리점·병의원·미용실 등 장소별, 주간·야간·심야 등 시간대별로 비상벨을 작동하여 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상 지역경찰 방법활동의 현황과 그 한계,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강화, 지역방범활동에 민간경비의 활용 확대 방안 및 민간경비 활성화방안 등에 관련된 결론부분을 정리하였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강기택·김철준, 치안정보분석, 경찰대학, 2007.

강영규 외, 경찰경비총서, 경찰대학, 2005.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김재광,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형훈, 생활안전외근론, 경찰대학, 200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박현호,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2007.

서진석, 민간경비론, 백산출판사, 2005.

이상철 외, 경호경비관계법, 한울출판사, 2006.

이윤근, 민간경비원론, 엑스피트월드, 2003.

정진환, 경비업법, 백산출판사, 200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2. 논문

강길훈, 한국 민간경비·경호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구 제3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7. 7.

곽대경,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호,
2002.

곽채기, 수익성 행사 경비 관련 경찰수당제도 도입 방안, 치안정책연구
소 연구보고서 2001-14, 2001.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 현행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분석 연구, 경희법학 제39권

- 제3호, 2006.
- , 독일의 민간경비법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 5.
- 노호래, 지역경찰의 인력·장비 재배치 기준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6-13, 2006.
- ,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18호, 2004.
- 박동균,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제5호, 2002.
- 박만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계 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 학원, 2001.
- 박병식, 기계경비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98-6, 1998.
- 박준석, 민간 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 서재근,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법능력 증대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서진석, 치안제도의 변화요인과 새로운 경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19권 제1호, 2005. 6.
- 신동운, 민간의 자율방법활동, 한국형사정책연구, 1990. 6.
- 안황근, 민간경비원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산업의 경제역 제고방안, 한국경비협회, 2005.
- , 일본 민간경비의 현황과 과제, 경기대학교문집 제50집, 2006.
- 양문승, 경찰서 및 파출소의 기능·역할의 정립과 설치기준·규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0-13, 2000.
- 이기호,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 논문집 제25집, 2005.
- 이백철외5인, 민간방법역량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방안,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제11집, 1995.
- 이상원,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

- 학회보 제15호, 2003.
- 이상훈,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05.
- 이성용, 독일 민간경비의 발전과 Police Private Partnership, 치안정책연구 제20호, 2006.
- 이운근·조용철, 미국사회안전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와 전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2005.
- 이창무,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2006.
- 이현희, 민간경비 성장에 대한 인과적 분석: 경제, 범죄율, 경찰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2005.
- 장석현,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2005.
- 최응렬,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08.
- 한신만, 민간경비업의 제도적 문제점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정논총 제41권 통권55집, 2006.

II. 국외문헌

1. 일본문헌

- 警備保障新聞社, 日本警備年鑑, 警備保障新聞社, 2003.
- 警視廳, 警備業年鑑, 警視廳防犯總務課, 2001.
- 警察廳, 警察白書, 日本 警察廳, 2001.
- 警察廳, 犯罪白書, 日本 警察廳, 2001.
- 全國警備協會, 「セキュリティ・タイム」, 日本 全國警備協會閣, 2002.
- 全國警備協會,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講習教本①, 日本 全國警備協會閣, 2001.

深澤賢治(ふかぎわけんじ), 警備保障のすべて, 東洋經濟新聞社, 2003.

2. 영미·독일 등 문헌

Albert, R. Roberts, *Juvenile Justice : Policies, Programs, Services*,
Chicago : Dorsey Press, 1989.

Franz-Ludwig Knemeyer, *Polizei - und Ordnungsrecht* Verlag C. H. Beck, 2002.

Lisken/Denninger(Hrsg.), *Handbuch des Polizeirechts*, Verlag C. H. Beck München, 2001.

Martin van Creveld,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tat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Simonsen, Clifford E.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 Hall, 2000.

책임연구보고서 2007-27

**지역경찰 방법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